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스포츠클럽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‘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’으로 선정된 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의 효력을 실제 사업기간인 5년에 부합하게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스포츠클럽 간 계약 이행 준수와 사업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(안 부칙 제4조 일부개정)

- 종전의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을 사업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2700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2700호 스포츠클럽 법 시행령 부칙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 전의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 령」 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 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는 부칙 제3조 중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 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다.	대통령령 제32700호 스포츠클럽 법 시행령 부칙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6월 30</u> <u>일</u>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134